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213
----------	------

2024년 12월 2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10월 16일 강석주 의원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- 상정일자 : 제327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강석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은,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,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등 다수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- 이 중 서울시에서 설치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소수자 활동을 홍보한 바 있고,

성과평가에서 성과 및 파급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
설치 취지가 퇴색되었음.

2. 주요내용

-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삭제함 (안 제44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‘성평등활동지원센터’ 민간위탁 사무 종료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4조 규정 삭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2 주요 내용 검토

가.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배경

-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는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개원하고, 2024년 6월 30일 자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이 종료되었음.

※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가 2024년 7월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하 ‘성평등’을 조례상 용어인 ‘양성평등’으로 기술함.

- 센터 주요 기능은 ▶양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▶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양성평등·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▶양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·운영 지원 ▶그 밖에 양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,
- 주요 사업으로는 ▶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, 조사 사업 ▶여성지

도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▶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성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▶ 여성교육매체 개발, 제작 및 교육방법 연구 ▶ 평화,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함.

○ 성평등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위와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.

〈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현황〉

-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 지원센터
- 위 치 :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, 2층
- 추진경위
 - ▶'12.5~6 : 여성NGO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
 - ▶'13.11 : 여성NGO정책 토론회에서 여성NGO센터 설립제안
 - ▶'14.6 :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시 여성NGO센터 입주결정
 - ▶'14.12 : 서울시 여성NGO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(여가재단)
 - ▶'16.8~11 : 여성단체 의견수렴회의, 청년여성 간담회 등 개최
: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운영규정 신설(제42조~제44조)
 - ▶'17.8~10 : 1기 민간위탁기관 공모
((사)여성사회교육원(대표:김희은)선정, '17.10.11~'19.10.10), **최초위탁**
 - ▶'18.3 :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개소식
 - ▶'19.8~10 : 2기 민간위탁기관 공모
((사)여성사회교육원(대표:김희은)선정.'19.10.11~'22.10.10), **재위탁**
: 수탁기관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
((사)젠더교육플랫폼 효재(대표 조영숙))
 - ▶'22.8~10 : 3기 민간위탁기관 공모
((사)젠더교육플랫폼 효재(대표 조영숙)선정, '22.10.11~'24.6.30), **재위탁**

• 예산현황
(단위: 천원)

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260,000	674,090	545,181	771,102	750,064	979,927	1,005,637	354,995

○ 동 센터는 ‘양성평등활동가 양성’과 ‘양성평등 교육’ 등 사업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,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등 다수의 평가와 연구에서 사업 효과성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음. 즉, 양성평등 교육이 여성가족재단 등 타 기관과 중복적으로 운영되며, 이론중심 교육으로 운영되어 효과성이 낮은 점, 참여자가 주로 여성에 편중되어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점,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사무임에도 과급력과 효과성이 부족한 점 등임.

- 관련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과평가 등 상세 평가는 아래와 같음.

구분	주요내용
1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	<p>(2019년) 종합점수(85.6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종합평가) 성평등교육 및 성주류화를 위한 센터만의 차별화된 사업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중간 지원조직의 <u>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유사기관과의 점검 필요</u> • (사업성과) <u>서울여성가족재단의 사업과의 차별성을 반영하고,</u> 간접지원하는 사업 추진방식에서 <u>전문성을 위한 역할 강화가 요구됨.</u> <hr/> <p>(2022년) 종합점수(80.1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종합평가) 소규모조직임에도 관리직 비율이 높고, 예산 구조가 <u>인건비 비중이 50% 이상으로 조직재설계가 요구됨.</u>사업의 전문성과 기여도가 크나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업 집행과 사업성과 증진을 위한 사업점검이 권고됨. • 성평등 지원단체의 성장지원을 위한 멘토링, 네트워크,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성평등활동 지원체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평등 활동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함. • 성평등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이해관계자 개념 및 <u>사업목적과 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</u>

구분	주요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해 알기 쉬운 교육 콘텐츠 개발과 커리큘럼을 세분화하여 보급될 필요가 있음.</u> <p>(2023.8) 종합점수(77.8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종합평가) 사업수행의 기관의 전문성은 확보되나 <u>경비로 81%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비의 비중이 매우 낮아 위탁사무의 효율성 차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.</u> • 본 사무는 서울시 전체를 범위로 삼고 있으며, <u>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사무임에도 불구하고, 조직 전반의 성과 및 영향력,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파급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.</u> 성평등지원활동의 파급력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사무의 성격에 맞게 활동, 성과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임 • 전체 성평등활동지원 사업이 서울시의 어떠한 <u>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.</u> • 사업수행 인력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, 전체적으로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과 노력이 요구됨.
2	<p>행정사무감사</p> <p>(2023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해 <u>시민대상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.</u> • 서울시 기관인 센터 홈페이지에서 성 소수자 소식이 자주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하며, <u>양성평등기본법이 성 소수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.</u> <p>(2019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사업추진의 부진과 집행률이 50%도 안 되는 사업들이 다수임.</u>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투입예산 대비 성과 방안 마련 필요함.

구분	주요내용
3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보고서 (서울여성가족재단)</p> <p>(서울시 성평등활동 지원기구 현황과 정책 과제, 2020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센터는 ‘성평등활동 지원’의 사각지대 해소, 성평등활동 지원 범주 확대, 성평등활동 조직화를 위한 인큐베이터, 지역 기반 풀뿌리 활동의 성인지성 제고면에서 성과를 보였음. • 운영적 한계는 ‘미니’ <u>중간지원조직으로서 광역 사무 전달체제로 지원범위가 한정적이며</u>, 명료화된 지원체계가 요구됨. <u>성평등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의 구체화가 부족하며</u>, ‘성평등활동 지원’ 개념의 포괄성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 구조에 지역 기반 조직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.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또한 서울시 전체 성평등 활동지원 사무로서의 한계를 보임. <hr/> <p>(서울시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활성화 방안연구,2023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드유 센터,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(시민대상), 서울시 성평등활동 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평등교육 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나 <u>성별 편중 문제,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위주의 교육범위 축소, 교육대상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, 이론교육 중심으로 추상적 교육 제공의 문제점 발생</u> • 양성평등교육 <u>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별,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,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.</u> • 향후 양성평등 교육 기관은 서울시 특성에 맞는 교육을 기획하고, 이를 시범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자치구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. 이것이 가능할 때 사회구성원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임.

- 한편 센터에서 추진한 ‘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활동 강사 양성과정’의 강사 풀 활용은 민간위탁 사무 종료 후에도 ‘서울여성가족재단’에서 ‘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’, ‘아동·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’, ‘홍보물 성별 영향평가 컨설턴트 활동’ 사업에서 계속 추진 중임(총 31명) ('24.10~)

나. 개정규정검토

-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4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) ①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.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·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.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·운영 지원 4.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·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- 민간위탁 사무가 종료되어 동 조례 제44조를 삭제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자치법규 흡수개정 방식에 따라 동 조항이 인용되는 조항이 없으므로, 삭제된 조항 자리에 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

삭제되지 않는 조항을 이동하여 정비함이 적절하며¹⁾,
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(성평등 활동 지원 센터 운영위원회), 제16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관리·운영규정) 관련 근거 규정 또한 정비되어야 할 것임.

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

제15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) 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6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관리·운영규정)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관리·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을 받은 관리·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다. 부서 의견

- 집행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에서는 기능 유사·중복 업무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임.

¹⁾ 법제처(2022).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.394p 참고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종료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조문 정비는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탁 사무종료에 따라 성평등 활동 지원에 있어 업무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 간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성평등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조정 및 중장기적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문 의 처

02-2180-8146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발 의 자: 강석주 의원(1명)
찬 성 자: 고광민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도문열, 민병주, 박 석, 박춘선, 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 이성배, 이종환, 장태용, 허 훈, 황철규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은,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,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등 다수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- 이 중 서울시에서 설치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소수자 활동을 홍보한 바 있고, 성과평가에서 성과 및 파급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설치 취지가 퇴색되었음.
- 이에, 중복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삭제함 (안 제4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4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) ①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</u> <u>2.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 · 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</u> <u>3.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 · 운영 지원</u> <u>4.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<u>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</u></p>	<p><u><삭> 제</u></p>

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·보고
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44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)를 삭제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(재정지출) 조·항 삭제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
 - (재정수입)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4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)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¹⁾은 없으므로 동 개정안에 수반되는 재정수입 순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 김 증 헌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세입현황

(2023년 9월말 기준 / 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(A)	수입액(B)	징수율	징수부진사유(향후 계획)
			B/A	(징수율 70% 이하 사업)
총 계	685,687	574,971	83.85%	
소 계	685,687	574,971	83.85%	
민간위탁금	593,127	482,411	81.33%	
민간위탁사업비	92,560	92,560	100%	
사업수입	0	0	0%	
이월금	0	0	0%	
법인전입금	0	0	0%	
공모사업	0	0	0%	

자료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(2023. 10.) 발췌